

특별조사 결과

구분	지적 및 조치 요구
<p>학예연구사</p> <p style="margin-left: 20px;">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전기 주요 유물 2점(육조법보단경언해권상, 자치통감)에 대해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내부 보고·승인(결재) 없이 임의 해체 및 재질분석 등 보존처리를 진행하였고, 보존처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육아 휴직(2017. 10.~2018. 12.)할 때 수장고 재반입 등의 조치 없이 보안 및 보존환경 등이 열악한 보존처리실에 장기간 방치하는 등 유물의 보존처리 및 관리 업무 부당 처리 ○ 조선말기 덕온공주가 서예작품 등의 유물을 족자로 제작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하면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출납 절차 등을 미준수하였고, 하자 보수가 필요한 유물 2점(9개월간 용역사업자 사무실에 방치)에 대해서 팀장에게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계약 및 유물관리 업무 부당 처리 ○ 독일 출장(2015년) 중 ◇◇ 박물관으로부터 중요자료(16C 자료)를 기증 받고서도 기증 심의를 누락하고 자료등록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한 채 보존처리실에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장자료 기증·등록업무 부당 처리 ○ 용역 수행 시 계약업체로부터 파티션, 벽장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고, 내부 보고·승인 없이 파티션을 교체해준 업체가 기존 파티션을 무단으로 반출하도록 허용 ○ ‘보존환경모니터링 및 관리’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른 적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 훈증기 유지보수 사업비에 포함된 소모품 미사용 등에 따라 계약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당초 계약대로 용역대가 지급 ○ ‘2019년 미등록 자료 기초보존처리 용역’ 계약서에 따라 실제 기술 등급의 인력투입 여부를 미확인하는 등 용역계약 관리·감독 소홀 ○ 중성매트 구입 시 계약서와 다른 규격으로 변경하여 납품받는데도, 계약변경 등의 절차 없이 당초 규격대로 납품된 것으로 검사 ☞ 소장자료를 임의로 해체·재질분석 등 보존처리하고, 수장고가 아닌 보존처리실, 용역업체 사무실 등에 장기간 방치 등 자료 관리 업무를 부당 처리하고, 용역업체로부터 파티션 등을 부당하게 제공받는 행위를 한 A에 대해 “징계(중징계)” 요구(※ 개별 처분요구서 참조) ☞ 용역업체 등 외부인의 수장고 출입 시 수장고 내 작업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용역계약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검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A에 대해 “주의” 요구(개인주의)

구분	지적 및 조치 요구
<p>학예연구관 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말기 덕온공주가 서예작품 등의 유물을 족자로 제작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하면서 하자 보수가 필요한 유물 2점의 실물확인 없이 용역이 정상 완수된 것으로 검사조서에 서명 ○ 훈증기를 실제로 점검 및 수리를 하였는데도, 수리 사실을 사전에 미보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 대가 미지급 ☞ 소장자료 보존처리용역 수행 시 실물확인 없이 검사조서에 서명하는 등 검사업무 등을 소홀히 하고, 훈증기 수리 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E에 대해 “주의” 요구(개인주의)
<p>학예연구관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환경모니터링 및 관리’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른 적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 훈증기 유지보수 사업비에 포함된 소모품 미사용 등에 따라 계약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당초 계약대로 용역대가 지급 ○ ‘2019년 미등록 자료 기초보존처리 용역’ 계약서에 따라 실제 기술등급의 인력투입 여부를 미확인하는 등 용역계약 관리·감독 소홀 ○ 중성매트 구입 시 계약서와 다른 규격으로 변경하여 납품받는데도, 계약변경 등의 절차 없이 당초 규격대로 납품된 것으로 검사 ☞ 용역계약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검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 L에 대해 “주의” 요구(개인주의)
<p>통보 (수사의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한글박물관 A는 용역 수행 시 계약업체로부터 파티션, 벽장 등을 부당하게 제공받고, 내부 보고·승인 없이 파티션을 교체해준 업체가 기존 파티션을 무단으로 반출하도록 허용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벽장, 파티션 등 수수)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 관계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할 것을 “통보”
<p>통보 (개선필요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말기 덕온공주가 서예작품 등의 유물을 족자로 제작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하면서 외부 위탁에 따른 보험을 미가입 등 ☞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등을 외부 위탁이 많은 국립한글박물관의 특성을 고려, 외부 위탁 시 보험 가입, 보존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소장자료 관리규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p>학예연구관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전기 주요 유물 2점(육조법보단경언해권상, 자치통감)에 대해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내부 보고·승인(결재) 없이 소장자료를 출납하는 등 유물의 보존처리 및 관리 업무 부당 처리

구분	지적 및 조치 요구
	<p>☞ 2017년 6월경 자치통감 등 중요 소장자료 출납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B에 대해 “주의” 요구(개인주의)</p>
<p>행정서기 M</p>	<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p> <p>○ M는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에서 계약담당업무(2017. 7. 17.~2021. 4. 11.)를 하면서 ‘중성매트 구매’(2019. 12. 18.~12. 24., 1,770만 원, ★★), ‘2019년 종합유해생물관리(IPM)’(2019. 2. 13.~12. 31., 1,660만 원, (주)△△) 등의 계약금액(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견적서의 세부내역 및 단가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p> <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M에게 “주의” 요구(개인주의)</p>

문화체육관광부

징계요구 및 통보

제 목	소장자료 관리 등 업무 부당 처리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소 관 실 국	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한글박물관
징 계 대 상 자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학예연구사 A

징 계 사 유

1. 업무 개요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주로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고문헌, 고화 등 서화류 관련 중요 유물을 관리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소장자료의 수집, 관리, 활용 등의 관련 업무를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 A는 2014. 7. 19.부터 2020. 12. 22.까지 한글박물관 자료관리팀 소속 직원으로서,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및 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소장자료 관리 관련

1) 육조법보단경언해, 자치통감 등 소장자료 보존처리업무 부당 처리

2017년 6월경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분임자료관리관인 위 사람은 자료관리팀 학예연구사 B와 향후 전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선전기 시대의 중요 유물¹⁾인 육조법보단경언해 권상(인경목활자, 1496년), 자치통감 권153~

156(초주갑인자본, 1436년) 2점을 보존처리하기로 서로 상의²⁾한 후, 위 두 유물(이하 “자치통감등”이라 한다)을 수장고에서 보존처리실로 반출하였고, 그 후 A는 자치통감등을 각각 2017년 7월, 9월에 해체 후 2020년 9월 현재까지 재질분석 및 보존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³⁾

자료관리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수장고에 자료를 반입하거나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자료관리팀장)의 책임하에 출납하여야 하고, 수장고에서 자료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자료관리관이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한 이후 반출증을 교부받아 반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료등록관리시스템(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자료의 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료관리규정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수집된 자료의 보존과 전시활용 등을 위해 직접 또는 필요 시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할 수 있되, 이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은 자료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글박물관은 고서 등 지류를 주로 보존·관리하는 국립기관으로서 오래된 지류의 경우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국가 문화유산을 쉽게 손상·훼손케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바,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및

1) 당시 자료관리팀 자료 등록담당 학예연구사 B 및 A는 자치통감의 경우 동일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육조법보단경언해의 경우 보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유물에 해당된다고 진술

2) A는 B가 먼저 육조법보단경언해 권상, 자치통감을 향후 전시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본인에게 보존처리 및 재질분석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B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3) 2020년 9월경 자료관리팀은 보존처리실 내 소장자료를 정리하던 중 육조법보단경언해 권상, 자치통감 등 중요한 유물 2점이 캐비닛 내 중성상자에 보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해당 자료의 원형 복구를 위해 2020. 11. 27.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하여 보존처리를 의뢰하였고 자치통감의 경우 보존처리 완료 후 '21년 1~2월 기간에 한글박물관 수장고에 반입되었고, 육조법보단경언해 권상의 경우 2021년 3월 감사일 현재 보존처리 진행 중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자료관리규정에 따라 보존처리 등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수장고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부적정한 보존환경 등으로 유물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보존처리를 완료하여 다시 수장고에 반입하는 등 소장자료를 함부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7년 6월경 학예연구사 B⁴⁾와 협의하여 자치통감등의 보존처리를 목적으로 수장고에서 보존처리실로 반출하면서 반출요청서 작성, 상태 점검 및 기록·유지 등의 자료관리규정 제30조에 따른 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반출⁵⁾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17년 6월경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치통감등의 보존처리를 진행하면서 보존처리계획(보존처리방식, 추진일정 등)도 수립하지 않고, 보존처리 개시에 대한 내부 보고⁶⁾나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치통감등을 해체한⁷⁾ 후 재질분석 및 보존처리 작업을 일부 진행하다가, 같은 팀 계약직 연구원 C에게 ‘육아휴직 갔다 와서 나머지 보존처리 작업을 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한 뒤, 자치통감등을 해체된 상태 그대로 보존처리실에 방치한 채 육아휴직(2017. 10. 10.~2018. 12. 31.) 하였다.⁸⁾

4) 2017년 당시 한글박물관은 소장자료의 임의 반출입 등 출납업무가 부적정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관리팀장(D) 등의 관리책임이 있으나, 당시 근무한 학예연구사 B, A는 동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가 완성(당시 D 자료관리팀장 퇴직)되었고, 수장고 출입체계가 개선된 상태인바,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하지 않음

5) A는 자료의 등록관리 담당자인 B가 위 유물을 수장고에서 직접 꺼내어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B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만, 반출행위 시점은 두 사람 모두 2017년 6월경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

6) A는 주간업무계획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간업무계획은 각 부서가 업무처리 상황을 정리하여 각 부서의 업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작성·공유하는 것으로, 보존처리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소장자료를 해체하고, 재질분석 및 보존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적어도 해체 전 상태조사를 완료하고, 추진일정이 포함된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자료관리규정 제49조에 따른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채 소장자료의 재질분석 및 해체를 한 것에 대하여 A는 팀장 및 관장 보고 등이 필요했었는데 하지 못했다고 진술

7) 한글박물관은 2차례 전문가 자문회의(2020.10.29./11.10.) 실시, 보존처리 방식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를 근거로, 자치통감등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었기에 유물의 해체나 보존처리는 불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함

8) 자치통감등이 해체된 채 보존처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육아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 전 보존처리를 신속히 완료하되, 완료하기 곤란할 때에는 위 자료의 손상·훼손 방지를 위해 ▲수장고에 재입고하거나, ▲보존처리를 국립

더구나 위 사람은 육아휴직 기간이 완료(2018. 12. 31.)되어 복귀한 이후에도 보존처리방안에 대한 아무런 보고나 조치 없이 2020년 9월⁹⁾까지 보존처리실에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장자료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1등급¹⁰⁾에 해당하는 중요 유물인 자치통감등의 보존처리에 대한 훼손 및 손상을 우려하게 만드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2) 덕온공주가 유물의 보존처리 위탁용역 관련업무 부당 처리

2019년 12월경 위 사람은 덕온공주가(家) 서예작품을 족자로 제작하는 외부위탁 사업(덕온공주가 윤백영 서예작품 족자제작 용역계약¹¹⁾)을 추진하면서 2019. 11. 28. 해당 유물을 계약도 체결되기 전에 반출¹²⁾하였고, 2019. 12. 24. 용역이 완료된 이후 제작된 족자를 반입하면서 당일 족자 상태가 불량한 유물 2점을 하자보수를 위해 다시 외부로 반출¹³⁾하였으며, 약 9개월 지난 이후 2020. 9. 11. 해당 유물 2점을 반입¹⁴⁾하였다.

자료관리규정 제48조(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의 실행)에 따르면 한글박물관은 수집자료의 보존, 활용 등을 위해 직접 또는 필요시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할 수 있으며, 외부 위탁 시 자료를 반출입할 경우에

중앙박물관 등에 위탁하는 등의 향후 조치방안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방침을 받아 조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판단됨

9) 2020년 9월경 한글박물관에서는 A의 소장자료 보존처리 및 자료관리 등에 대한 비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사 발령을 통해 자료관리팀에서 기획운영과로 이동하여 보존처리 등의 직무를 배제 조치하였음

10) 자료관리규정 [별표 1] 자료 등급 분류기준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 자료는 1등급에 해당함

11) (계약현황) 계약기간: 2019. 12. 3.~12. 24., 계약금액: 19,360천 원, 계약상대자: ■■

12) '덕온공주가 윤백영 서예작품 족자제작 용역' 계약 체결 전인 2019. 11. 28. A는 같은 팀 학예연구사 B와 함께 위 용역의 계약기간이 짧다(1개월)는 이유로 해당 자료를 사전에 반출하였음

13) 2019. 12. 24. 반입 당시 자료 9점 중 2점(덕온공주가 자료, 윤백영 필 사규영전)은 족자 표면에 좁쌀 같은 기포가 발생되어 이를 하자 처리하기 위해 다시 박물관 외부로 반출하였음

14) 2019. 12. 24. 용역업체는 다시 반출된 소장자료 2점의 경우 2020. 9. 11. 반입 시 A의 요청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오랫동안 한글박물관 측에서 반입을 요청하지 않아 업체 측이 먼저 연락하여 유물을 반입하였음(업체 대표 유선 확인)

는 같은 규정 제30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9. 12. 3. 덕온공주가 서예작품 9점(액자 1점 포함)을 족자로 제작하기 위해 위탁 용역업체에 반출할 때에는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외부 반출증 작성, 유물 상태점검 및 자료등록관리시스템(등록카드 등) 기록 등 소장자료 출납절차를 미이행¹⁵⁾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19. 11. 29. 족자제작 계획 결재 시 수량을 총 8점으로 보고하였는데 2019. 12. 3. 계약체결 시에는 임의로 1점(제기처량전)을 추가하여 수량을 총 9점으로 변경했는데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한 문서나 내부결재 등이 없었으며, 2019. 12. 24. 용역업체 납품 시 기포가¹⁶⁾ 발생한 족자 2점을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해 다시 외부로 재반출했는데도 자료관리팀장에게 계약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¹⁷⁾ 검수조서에 서명토록 하는 등 용역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하였다.

더구나 위 사람은 하자가 발생한 2점을 약 9개월 간 처리상황, 재납품 여부, 납품 시기 등을 확인·점검하지 않은 채 2020. 9. 11. 제작업체가 스스로 다시 납품할 때까지 반환 촉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¹⁸⁾하였다.

그 결과, 한글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소장자료 반출입 및 관리 등이 적정한 내부통제 없이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하고 추진함

15) 위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와의 인수인계증만 있고, 반출입에 대한 메모보고 등의 기록이 전혀 없었음

16) 46-01-15번(덕온공주가 자료), 40번(윤백영 필 사규영전)에 족자처리 시 기포가 발생하였음

17) A는 문답 시 기포 발생 등 하자 발생 상황을 팀장 E에게 구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제출한 확인서에 하자 발생에 대한 구두 보고 없이 2019.12.30. 용역 완료계 접수문서를 공람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하자 발생 시 검수조서 등 완료문서에 하자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나 이상 없이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거짓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2020.9월 반출된 자료가 뒤늦게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E이 즉시 관장에게 보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두로 E에게 하자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A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려움

18) 2019. 12. 24. 용역업체가 다시 반출된 소장자료 2점의 경우 2020. 9. 11. 반입 시 A의 요청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오랫동안 박물관 측에서 반입을 요청하지 않아 업체 측이 스스로 연락하여 유물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됨

에 따라 소장자료의 손상 및 훼손 등이 우려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3) ◇◇ 박물관 기증유물 부당 처리

2015. 6. 3. A 등 3명¹⁹⁾은 국외 출장 중 ◇◇ 박물관 F 박사로부터 16세기 활자 인쇄본(성서 표제지 1장, 개인 소장품)을 기증받았다.

자료관리규정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 등에 따르면 기증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자료관리관, 전시운영과장, 연구교육과장, 관련 학예연구직 등) 이상으로 구성된 자료기증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증심의회에서 기증 수락이 결정될 경우 관장은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료관리관은 구입 및 기증·기탁 받은 자료를 같은 규정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등록명세서에 따라 등록하고, 수장고에 격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 6. 3. 국외출장 중 독일 ◇◇박물관 관계자가 한글박물관에 기증할 목적으로 전달한 16세기 인쇄 활자본을 수령하고서도²⁰⁾, 출장 종료 이후 2021년 1월까지 해당 기증자료에 대하여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기증 심의 및 자료 등록 등의 절차를 누락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존처리실에 장기간(5년여간) 방치²¹⁾하는 등 기증자료 등록·관리 업무를 부당 처리하였다.

나.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²²⁾

19) 국립한글박물관 A, G, H 직원

20) A는 유물을 기증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5년 국외 출장에 동행한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유물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A가 총괄하여 작성하고 결재를 상신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기획운영과-2878(2015. 7. 16.,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유럽3개국))) 중 주요 업무수행 내용에 '독일 16C 중요자료 획득'이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1) 2021. 1. 28. 자료관리팀은 보존처리실 소장자료를 정리하던 중 발견

22)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제13조의3항 등과 같이 갑질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2018. 12. 24.)

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밖에 직무관련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A는 계약내용에 없어 납품 의무가 없는 물품 등을 직무관련자 등에게 계약 변경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외로 부당하게 제공하도록 요구²³⁾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A는 조달청 외자구매를 통해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구입²⁴⁾’(2019. 11. 28.~2020. 3. 23., 242,652,310원, ○○(주))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의 부대물품내역²⁵⁾에 없는 실험대(작업용 테이블) 3개²⁶⁾를 보존처리실 공간 구성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계약업체 ○○(주)로부터 제공²⁷⁾ 받았고, 벽장 1개²⁸⁾

23)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 2.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갑질 유형 중 기관 이기주의 유형(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갑질로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 계약 외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됨

24) 중국 ㉯㉯, 독일 ○○(주)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독일 ○○ 제품으로 총액계약으로 체결함

25) (계약문서 상 부대물품 내역) 무진동테이블(Anti-vibration table), 자동전압 조정기(AVR), 펌프(Pump)

26) ○○(주)가 제공해준 실험대(1개)에 대해 흠집 등의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면서, 보존처리실 공간 구성에 맞게 추가로 2개를 요구하여 총 3개를 수수

27) A 진술, A와 ○○ 담당자와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

28) 해당업체는 통상적인 계약 관행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벽장과 실험대의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를 보존처리실의 현미경 설치 위치에 마스크, 컨식클리닝 관련 물품을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계업체인 ▲▲²⁹⁾에게 요구³⁰⁾하여 부대물품 명목으로 추가로 제공받아 한글박물관 보존처리실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A는 ‘2019년 종합유해생물관리(IPM)’ 용역 계약업체인 ‘(주)△△’가 2019년 여름경(일자 미상) 용역 수행 중 한글박물관 보존처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과 지류보존처리작업대³¹⁾를 일부 훼손³²⁾한 것에 대해 처리하면서 파티션의 훼손 정도가 신품으로 교체할 정도가 아닌데도, 이에 대하여 내부 보고나 승인 없이 수리비³³⁾를 초과하는 가격³⁴⁾의 신품 파티션을 ‘(주)△△’로부터 수수하여 한글박물관 보존처리실에 설치하였으며, 기존 파티션은 철거 후 해당 업체 사무실로 반출³⁵⁾하도록 하였다.

관련자 등의 주장 및 검토결과

["2-가-1)항" 관련]

A는 2017년 당시에는 주간업무계획을 작성·제출하여 위 유물들의 보존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고, 수장고에서 보존처리실로 반입하였을 때나 해체, 재질 분석 등을 진행할 때 구체적인 보존처리계획에 대해서는

29)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구매를 추진하면서 제조사 및 제품별 특징점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교해줄 수 있는 컨설팅 업체가 필요해 ▲▲(2017년 현미경 구매 계약 업체)과 논의하였음

30) ‘▲▲’은 직접적인 계약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직무관련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A는 ‘▲▲’과 2019년에만 33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비록 벽장이 업무공간에 설치되었고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으로서 민간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였고, 청렴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만한 행위로 판단됨

31) A는 지류보존처리작업대의 경우 ‘(주)△△’가 제공한 파티션이 기존 파티션 보다 고가로 생각하여 내부 보고·승인 없이 한글박물관에서 자체 수리하는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업체에 수리(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음

32) A와 (주)△△ 대표는 보존처리실 청소 작업 시 파티션과 지류 보존처리작업대를 일부 훼손(당시 파티션의 경우 흔들림이 심하여 책상 등으로 고정시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 확인 결과 지류보존처리작업대에 찍힌 흔적(2개소)을 확인되었으나, 파티션을 나사 등의 부품 부족으로 일부만 조립된 상태에서는 파티션의 흔들거림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물리적 훼손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음

33) 파티션은 물리적인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류보존처리작업대의 훼손도 경미(2개소 모두 우측 부분에 치우쳐 있어 한글박물관의 소장자료 보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임)하여 파티션과 지류보존처리작업대 모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심각한 수준의 훼손은 아닌 것으로 보아 수선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4) 파티션 설치비는 250~300만 원으로 추정(주)△△ 대표는 업체의 자체 사무실과 한글박물관 파티션 설치비용을 함께 지불(400백만 원)하였고 사무실 설치 비용이 100~15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음

35) (주)△△에서는 한글박물관에서 반출한 파티션을 사무실로 옮겨 설치하여 사용하였음

상급자에게 공식적인 보고(승인) 없이 본인이 판단하여 처리한 것은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자치통감등은 중성상자에 담아 보존실 내에 보관하여 보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한글박물관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나 소장자료의 관리 소홀로 훼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요 유물의 해체, 재질분석 및 보존처리를 진행하면서 관계 규정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존상태, 처리방식 및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보존 처리계획을 보고·승인받지 않은 점, ▲유물이 해체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하고자 할 때 신속히 보존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점, ▲휴직 전 처리가 곤란할 때는 자료의 손상·훼손 방지를 위해 수장고에 재입고하거나, 보존처리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위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보고하지 않은 점, ▲통상적인 보존처리 기간³⁶⁾에 비해 3년 이상 장기간 지연·방치한 점, ▲보존처리실이 수장고에 비해 보안, 보존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³⁷⁾하여 유물이 손상실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한글박물관은 위 자치통감 등에 대한 보존처리 진행절차 및 유물상태 점검 등을 위해 2차례(2020. 10. 29., 11. 10.)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는 ▲동 유물의 해체가 불필요했고, ▲원형 복구가 어려운 무리한 해체이며, ▲유물처리 방법에 대한 기준설정 미흡, ▲보존처

36) A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1년 내 유물의 보존처리를 진행한다고 진술

37) 보존처리실은 단기간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공간으로, 2017년 이후 수개월에서 2년 이내 계약직원 5명이 퇴사한 바 있고, 엄격히 출입관리(3단계)되고 있는 수장고가 아닌 보존처리실(1단계)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보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보존환경 또한 보존처리실이 수장고와 공조 시스템을 공유한다고 하나, 보존환경 기준(서화, 전적류의 경우 20±4℃, 습도 50~60%)과 다르게 습도의 경우 겨울철에는 수일 동안 위 기준에 미달되고 있어, 보존처리실은 소장자료를 장기간 보관하는 적절한 보존환경으로 볼 수 없음

리의 기본 과정 미이행 등 주로 해체의 결정, 처리절차 및 방식 등에 대해 걱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⁸⁾. (세부내역 [별표 1] 참조)

["2-가-2)항" 관련]

A는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소장자료를 반출입할 때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유물이 한글박물관 외부에 나가 있는 중간중간 위탁업체에 연락하였고, 위탁업체의 작업환경 중 온·습도 등 보존환경은 우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표구사에 비해 보존환경이 나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업체 대표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하자보수 기간 중 A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소장자료를 외부 업체에 보존처리를 위탁할 때에는 보안, 보존환경 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는데도 면밀한 검토·확인한 내용이나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족자 제작이 1개월 미만인데도 하자보수는 9개월 정도가 소요된 점 등으로 볼 때, 위 사람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가-3)항" 관련]

A는 2015년 국외공무여행 중 ◇◇ 박물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보존처리실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가 직접 작성하여 보고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주요 업무수행결과에 ‘독일 16세기 중요자료 획득’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³⁹⁾,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한 출장자 2명(G, H)이 해당 자료를 ◇◇ 박물관 관

38) 한글박물관 측 자문결과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추가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받은 내용은 [별표 2] 참조

(2021. 3. 16. 13~15시 I, J, K 등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하여 감사 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음)

39) 현재 국립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지류 관계 전문가도 위 유물이 16세기 유물이 맞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계자로부터 받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며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사람의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인정하기 어렵다.

["2-나항" 관련]

A는 실험대, 벽장, 파티션 등을 개인적으로 수수하지 않고 보존처리 담당자(A, 공무원 2명 등)가 근무하는 공적공간인 보존처리실에 현미경 구입에 따른 부대물품으로 실험대, 벽장을 제공받아 설치하였고, 파티션은 용역업체가 작업 중 훼손한 파티션을 수리하는 대신 신제품으로 교체해준 것이므로 위 물품 수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가 계약업체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물품이 비록 한글박물관 내 공적인 업무공간에 설치되고 공무 수행에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받을 수 있는 물품도 아니고⁴⁰⁾ 계약변경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가공무원으로서 내부 보고나 승인 없이 민간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한글박물관에 설치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⁴¹⁾될 수 있으며,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한 것에 해당되는바, 위 사람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문책요구 양정 위와 같이 A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및 관리 업무 등의 담당업무를 부당·태만하게 처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계약

4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2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이 행정목적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가 허용됨

4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170(2021. 6. 29., 청탁금지법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행위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업체 등 민간업체로부터 실험대, 파티션 등의 물품을 임의로 수수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을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위 사람이 계약업체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수한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명백히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국립한글박물관장은

- ①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 등 규정과 다르게 업무를 부당·태만하게 처리하고, 민간업체로부터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을 수수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중징계) 하시고,(징계)
- ② 계약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명백히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4항⁴²⁾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관련자]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학예연구사 A

[별표 1]

국립한글박물관 주관 전문가 자문회의(2020. 10. 29./11. 10) 주요의견

42)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가	자치통감 권153~156 (한구 1066)	육조법보단경언해 권상 (한구 6862)
①	보존처리 작업을 진행시키는 것보다 지금 상태에서 다시 원형으로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현재 보존상태가 해체하여 보존처리하는 과정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됨. 평량 측정을 위해 해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보존처리 작업을 원래대로 되돌리기에 무리가 있음.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잘못된 보수지 부분을 제거한다고 해도 원점유의 손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②	지력에 문제가 없어 해체처리가 필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평량 측정 등 연구를 위해 해체한 것으로 보임.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해 임의로 해체하는 것은 문화재를 훼손 파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시료채취도 목적 없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 테마를 알 수 없으나 무의미한 것으로 보임	현재 보존처리 내용은 “국립기관 보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됨. 보존처리를 행함에 있어 보존윤리도 없으며 보존방침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임 진행되어 온 보존처리 내용을 복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수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향후 보존처리계획을 잘 세워 다시 복원 필요
③	해체된 상태로 보아 보존처리가 필요하지 않았음 것으로 판단됨	배접한 상태 등을 보아 수준 있는 장인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의 보존처리 방식이나 현 상태가 유물의 보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④	해체 전 자료 상태에 대한 컨디션 체크 및 관련 기록 일체가 존재하지 않아 보존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중대 사안임 ※ 두 종 공히 현 상태로 전시 출품은 어렵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복원 처리를 실시해야 함	1496년 간행 귀중본임에도 해체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상태 점검 기록도 없어 상황 파악 시급. 자료 자체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 무리한 해체로 판단되며 해체를 통하여 원형상실의 아쉬움이 있음 또한, 일부 처리된 보존상태도 균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아 향후 보존처리 단계에서 기 배접된 배접지 제거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⑤	현재 표지와 내지가 낱장으로 해체된 상태로 내지는 접히는 판심 부분에 찢어진 현상이 관찰 해체처리가 필수는 아닌 상태로 보이나 현재는 낱장으로 해체가 되어있으므로, 향후 손상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에 대한 보강 후 원상태로 장정하여 부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됨	보강 상태가 내지의 손상상태와 함께 보았을 때 일부 재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해당 전적의 향후 보존을 위해 전반적인 보존처리 진행상태, (일부 재처리 여부 등), 일정, 분석결과 활용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
⑥	보존처리 필요성이 부족한 유물 해체로, 현 상태에서 다시 제작하여 원형 복원 필요	유물 보존처리 방법에 기준 설정 미흡. 보존처리 윤리규범의 “원형 유지, 최소한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전체 처리전으로 회복 후 재처리 요함
⑦	유물의 상태는 양호하나 현재 해체되어 있음. 유물의 내지의 손상이 적으므로, 현 상태에서 해체 전의 사진을 참조하여 다시 선장으로 제작 하도록 하여야 함 가능하다면 제작하기 전 책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음	해체 전 기록이 없으므로 현재의 손상이 보존처리 중 발생했을 가능성이 큼. 현 상태의 보존처리는 비정상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며 기본 크리닝조차 하지 않고 배접하는 등 앞으로의 보존처리를 난감하게 만들어 놓았음. 기 배접지 제거는 최대한 주의를 요함

자료: 국립한글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감사담당관실 주관 추가 전문가 자문회의(2021. 3. 16.) 주요 내용

- 보존처리방식의 결정은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어 특정 처리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물을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해체 및 보존처리계획 등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내부통제 없이 중요한 자료를 학예직 직원 단독으로 결정하여 상태조사 결과 등 아무런 기록 없이 보존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함
- 보존처리 대상에 대한 보존처리의 필요성, 기준 등이 포함된 보존처리계획 및 처리내용에 대한 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처리가 미흡하였고, 보존처리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서 보존처리에 있어서 낱장 배접을 지양하고 있으나 낱장 배접을 실시하여 보존처리 이후 책자를 완성할 때 두꺼워질 수 있으며, 일부 전체 배접 부분을 제거한 후 결손부분만 보강(매움처리)하는 재처리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처리 시 원형 훼손 우려 등의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자료: 전문가 자문결과 재구성